

의안번호	2218218
의 퇴 인	배준영의원
회 답 일	2026.7.23.
추계번호	26B2026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층간소음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억 5,400만원, 2032년 1억 4,8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2억 2,800만원(연평균 2억 4,6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제 공 등(안 제8조) 층간소음 통합정보관리체 계의 구축·운영 등 (안 제10조)	718	—	108	110	112	1,048	210
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4조)	36	36	36	36	36	180	36
합계	754	36	144	146	148	1,228	246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관리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개선방안 3.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조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3항)	
2	안 제5조 (층간소음의 기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층간소음 및 바닥충격음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6조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측정 등)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가 제5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기준(이하 “바닥충격음 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을 명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바닥충격음의 측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측정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제7항)	재량규정
4	안 제8조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제공 등)	사용검사권자는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10조 (층간소음 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층간소음 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층간소음 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제1항) 1.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2.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부여되는 벌점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집·관리하는 바닥 충격음 측정 결과 4.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및 소방서 등으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 및 신고, 그에 대한 처리결과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통합정보관리체계의 효과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2시스템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2항)	
6	안 제12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항) 1.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 2.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재량규정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	의무규정
7	안 제13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8	안 제14조 (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정책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 위원회(이하 “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항)	의무규정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제3항) 1.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3. 건설기술, 건설 관련 법령 및 갈등조정 등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9	안 제15조 (협의체의 운영 등)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계 기관, 바닥충격음 측정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10	안 제16조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의 현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학술조사, 층간소음 저감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측정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4조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 (제3호)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구용역비, 조사비 및 행정비용 등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본계획의 계획기간과 수립 주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대상, 조사주기, 조사방법 및 표본규모 등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2022년 8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및 2023년 12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 등을 수립·발표한 바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2	안 제5조 (층간소음의 기준)	-	• (미대상)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검사기준」에서 층간소음 및 바닥충격음의 기준을 이미 마련하여 운영중이므로, 해당 조문은 현행 고시 등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와 관계가 없음
3	안 제6조 (사용검사 전 바닥 충격음 측정 등)	×	• (제3호) 제정안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인 공동주택에 대해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측정 등이 실시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연간 사용검사 대상 세대 수, 공공사업주체의 공급물량, 세대당 측정단가, 측정방법 및 기준 미달률, 보완시공 횟수와 해당 공동주택별 공사비 등이 정해지지 않아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안 제8조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제공 등)· 안 제10조 (층간소음 통합정 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	• (추계)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제공을 위하여 층간소음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비용을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산
5	안 제12조 (공동주택 층간소 음관리위원회 구 성·운영 등)	×	• (제3호)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고, 해당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 구체적인 지원여부, 지원내용 및 지원계획 등이 나타나지 않아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6	안 제13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	• (제3호) 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은 층간소음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 지원대상 공동주택 수, 상담·진단 및 교육 횟수와 지원단가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고 현시점에 구체화되지 않아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7	안 제14조 (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추계) 유사위원회 운영경비를 참고하여 사업비를 추산함
8	안 제15조 (협의체의 운영)	×	• (제3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회의수당 및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등)		- 다만, 제정안은 협의체의 구성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수, 위원 수, 민간위원 비율 및 연간 회의 개최 횟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 비용을 추산하기 곤란함
9	안 제16조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 (제3호) 제정안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층간소음 상담·진단·교육, 학술조사, 층간소음 저감 연구·기술개발 및 바닥충격음 측정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 여부, 지원대상, 사업규모, 국비·지방비 분담비율, 사업기간 및 지원단가 등이 정해지지 않아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기 곤란함 - 다만, 참고로 광명시는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센터장 및 상담인력 등을 배치하고, 전화상담, 자문관리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지도·감독,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연간 약 2억원의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각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예상되는 비용을 추정하기 곤란하나,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 사업비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함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¹⁾ 적용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의 부칙과 정부의 사업준비일정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안 제8조·제10조)

-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비용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참고하여 추산함
- (시스템 구축비용) 응용소프트웨어 개발비(578백만원) + 클라우드 사용료(50백만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자산취득비(90백만원)
 - (시스템 유지·관리비)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SW개발비 기준 용역 유지관리 효율과 국토교통부 제출의견을 참고하여 15%로 가정²⁾
 - 이때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7년 이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1년)을 거쳐 2029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³⁾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 다만,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바닥충격음성능검사 신청 및 결과통보 등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위탁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부재하여 관련 비용을 추계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소요비용을 본 추계값을 상회할 수 있음
 - (일부추계) 국토교통부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시스템 구축비용	718	-	-	-	-	718
시스템 유지·관리비	-	-	108	110	112	329
합계	718		108	110	112	1,046

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바닥충격음성능검사 신청 및 결과통보 등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위탁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부재하여 관련 비용을 추계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소요비용을 본 추계값을 상회할 수 있음

- 2) 효율제 유지관리비는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시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용요율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효율(10~15%)을 준용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8.)
- 3) 기획재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6.5.에 따르면 S/W의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하도록 함

나. 정책조정위원회 운영(안 제14조)

- 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불확정적이므로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위원회 운영비용을 추산함
 - 위원수: 수당지급이 필요한 민간위원 수는 15인으로 가정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의 위원을 두도록 규정한 제정안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수당이 지급되는 민간위원은 15인으로 가정함
 - 개최일수: 연 12회로 가정
 - 개최일수는 국토교통부 제출의견을 참고하여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회의참석수당 단가: 민간위원 회의당 참석수당은 1인당 20만원⁴⁾을 적용함

[표 3] 정책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위원회운영비	36	36	36	36	36	180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층간소음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억 5,4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2억 2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4) 기획예산처(2026)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함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 화시스템 구축·운영비	718	—	108	110	112	1,048
위원회운영비	36	36	36	36	36	180
합계	754	36	144	146	148	1,228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nabo.go.kr